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20316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20316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5441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임경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상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변론 종결 2022. 1. 19.

판결 선고 2022. 2.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5441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228,311,6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8,311,64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8행의 "2017. 3. 6."을 "2017. 3. 3.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하3행 내지 제3면 2행의 "1) C은 2018. 4. 27. 어머니 G이 사망하여 ..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C의 어머니인 G이 2018. 4. 27. 사망하자, C은 2018. 5. 17. G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C의 아버지인 J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0. 5.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다음, 같은 날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C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상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5. 11.로서 원고와 C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이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증여각서가 작성된 2015. 11. 24.로서 위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이전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과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11. 24.자 상속재산증여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각서에 2015. 11. 24.자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상속재산증여각서

상속재산의 범위

각서인 C의 부친 J, 모친 G으로부터 발생하는 상속재산(동산, 부동산 등) 일체

상속재산의 증여 시기

위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발생하는 시점

증여받을 자(각서인 C의 배우자)

피고

위 각서인 C은 위 상속재산의 범위 자인 부친 J, 모친 G으로부터 향후 상속재산(동산, 부동산 등) 일체가 발생할 시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위 증여받을 자 피고에게 즉시 증여할 것을 각서하며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 각서 자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각서를 작성하고 인감 날인함.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로 기재된 2015. 11. 24.가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초한 등기원인일자인 2018. 5. 11.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자가 2015. 11. 24.이고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도 2015. 11. 24.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2018. 5. 11.자 증여계약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로 당시 이 사건 각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2015. 11. 24.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기존 주주 겸 임원들인 N 등으로부터 D의 주식을 양수한 이후 이를 C에게 증여하였고, D에게 운영자금을 입금하여주는 등 C의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인 지원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 제출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증여계약서(을 제4, 5호증)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로 되어 있는 2015. 11. 24. 이후, 즉 2016. 3. 18., 2016. 5. 2., 2016. 6. 17.경 각

작성되었고, D 명의 계좌로의 입금(을 제6호증)도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로 되어 있는 2015. 11. 24. 이후인 2016. 5. 20., 2016. 6. 30. 각 이루어져서,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의 부친 J은 1988. 10. 5.경 이미 사망하여 그에 따른 등기관계만 정리하지 않았을 뿐 상속재산이 이미 발생하여 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J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뿐만 아니라 G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역시 실질적으로는 J이 소유한 부동산이었기 때문에(피고의 2020. 8. 4.자 답변서 참조),¹⁾ J이 사망한 1988. 10. 5.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J 명의의 부동산(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뿐만 아니라 G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역시 C이 상속하기로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J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 안성시 ○ 대 516m², P 답 1,726.5m²도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C의 다른 형제들인 Q, R, S이 '1988. 10. 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18.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더더욱 C과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C이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피고의 주장대로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 대상 목적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C이 이 사건 각서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서에는 '부친 J, 모친 G으로부터 향후 상속재산 일체가 발생할 시 이를 피고에게 즉시 증여하겠다'라고만 적혀 있어 향후 부친의 사망 및 상속재산의 발생을 예정하는 듯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와 같이 기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서가 2015. 11. 24. 당시 실제로 작성되었다면, 보다 명확하게 '부친 J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지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또는 '부친 J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지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상속재산이 발생하였는데, 위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는 즉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의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²⁾ ④ 설령 이 사건 각서가 2015. 11. 24.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 그러나 이 사건 각서의 경우, 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증여의 목적물이 '부친 J, 모친 G으로부터 발생하는 상속재산(동산, 부동산 등)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C이 어떠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상속재산이 동산인지 토지인지 건물인지, 어떠한 동산 또는 부동산인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들도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바, 그 목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C이 2018. 5.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8. 5.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에 비추어 볼 때, C과 피고 사이에는 2018. 5. 11.자 증여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는바,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는 그 무렵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상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5. 11.을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은 C과 피고 사이의 2018. 5. 11.자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7. 2. 28. 및 2017. 3. 3.경 각 체결되어 있었고, ② D은 2018. 5.경 이미 중소기업은행 등에게 대출금, 물품대금, 임금 등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위 2018. 5. 11.자 증여계약의 체결 무렵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이후 실제로 원고가 2018. 8. 28. E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119,915,995원을, 2019. 3. 18. F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79,635,749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2020. 7. 6.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8. 5. 11. 배우자인 피고에게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C과 피고 사이의 2018. 5. 11.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24. C과 사이에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약정하고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2018. 5. 17. 마친 것이므로 위 2015. 11. 24.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그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에 따라 2018. 5. 11.경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형배

판사김종기

판사박영주

별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C의 모친인 G이 1993. 6. 14.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5. 17. C이 2018. 4.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C의 부친인 J이 1963. 6.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5. 17. C이 1988. 10. 5.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6호증).

2)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C이 향후 J 및 G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할 불특정의 상속재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로 상속받을 시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만일 이와 같은 포괄적인 내용의 합의를 처분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의 기준 시로 삼을 경우, 채무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부담을 폭넓게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예비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합의를 체결하여 두거나, 사후에 이와 같은 합의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가능성이 있는데[판례는 피보전채권 발생 후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었던 상속재산이 생긴 경우에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포함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다면 채무자의 기존 재산 처분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크다.